# 국유철도간이역설치기준

제정 2004. 12. 30 철도시설과 - 1614

제1조(목적) 이 기준은 국유철도건설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역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간이역 설치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.

제3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배치간이역" 이라 함은 철도운영자가 직원을 배치하고 여객화물 또는 운전취급을 하는 간이역을 말한다.
2. "무배치간이역" 이라 함은 철도운영자가 직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여객 및 화물취급을 하는 간이역을 말한다.

제4조(간이역의 설치) ①철도운영자는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간이역 또는 임시승강장을 설치.운영할 수 있다.

1. 간이역을 설치할 지점과 인접역간의 거리가 3㎞ 이상일 때
2. 1일평균 승강인원이 300 명 이상으로 예상될 때
3. 대도시 근교지역으로 주민의 편익상 특히 필요할 때
4. 관광 또는 보양지역으로써 특히 필요할 때
5. 타 교통기관의 1일 2왕복 이내의 지역으로써 특히 필요할 때

②제1항에 의거 간이역 및 임시승강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5조(간이역의 설비) ①배치간이역에는승강장, 대합실 화장실 등 여객취급에 필요한 최소한의시설을 설비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화물측선을 부설할 수 있다.

②무배치간이역에는 승강장을 설비하여야 한다.

③제1항, 제2항의 승강장 규모는 국유철도건설규칙이 정하는 바에

의한다.

제6조(간이역의 승격) 무배치 간이역에서 배치 간이역으로 승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. 다만,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무배치 간이역중 1일평균 승강인원이 각 500명 이상일 때
2. 화물 취급량이 1일평균 1량이상으로 예상될 때

## 부 칙

이 기준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